

[보도자료 별첨]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2016. 8. 2.

금 용 위 원 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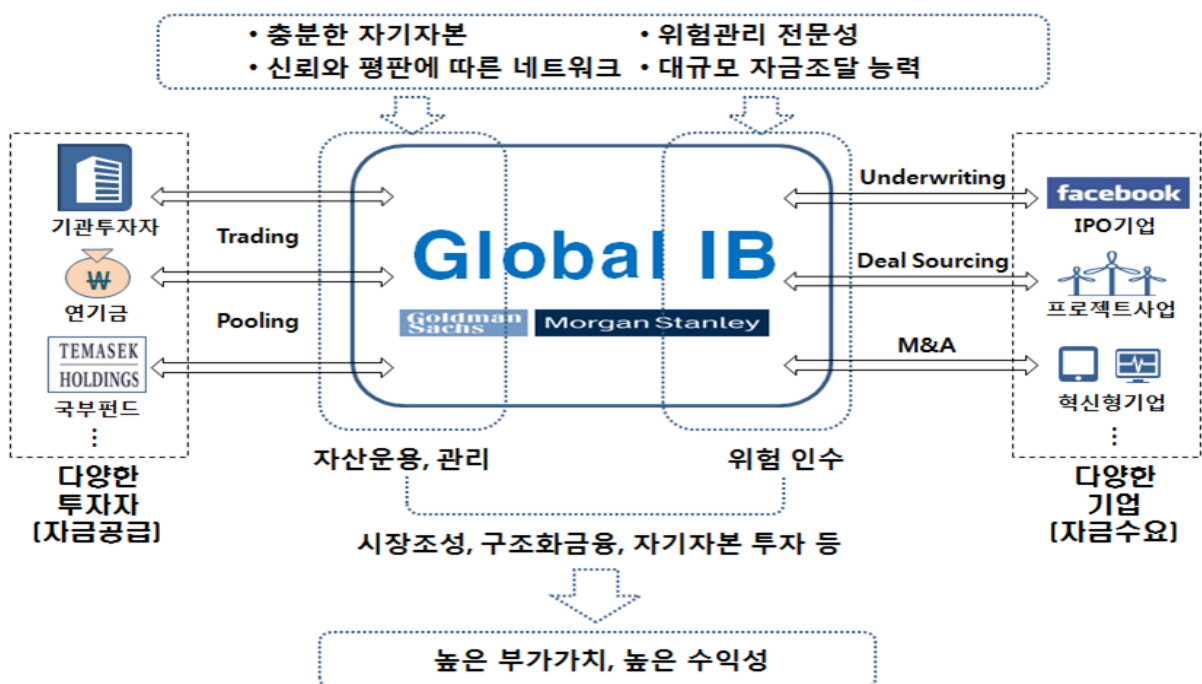
I. 추진배경	1
II. 기본방향	8
III. 세부 추진방안	9
1.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9
2.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	12
3.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 제고	15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17
IV.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	18
V. 기대효과	20
VI. 향후계획	22

I. 추진배경

1 왜 초대형 투자은행이 필요한가?

-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은 증권 인수(underwriting) 등 투자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로 출발
 - 투자은행의 영역은 M&A, 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loan financing)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의 의미로 변화
 - 투자은행은 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 ②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전문성」, ③ 투자자와 자금수요자 등 시장의 신뢰와 평판에 바탕한 「네트워크」, ④ 이를 활용한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
 - 이를 통해 자금순환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높은 수익을 향유

【 초대형 글로벌 IB의 영업구조 】



□ 특히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

○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

* 대출중심의 은행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없어 고위험 자금공급 유인 부족

*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2015년 2조원이 사상최대치),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려움

⇒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

-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

* 벤처.중소기업 →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 IPO주선

중견기업.대기업 → 주식.채권인수, 구조화금융, M&A 중개 등

○ 또한, 세계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M&A 중개.주선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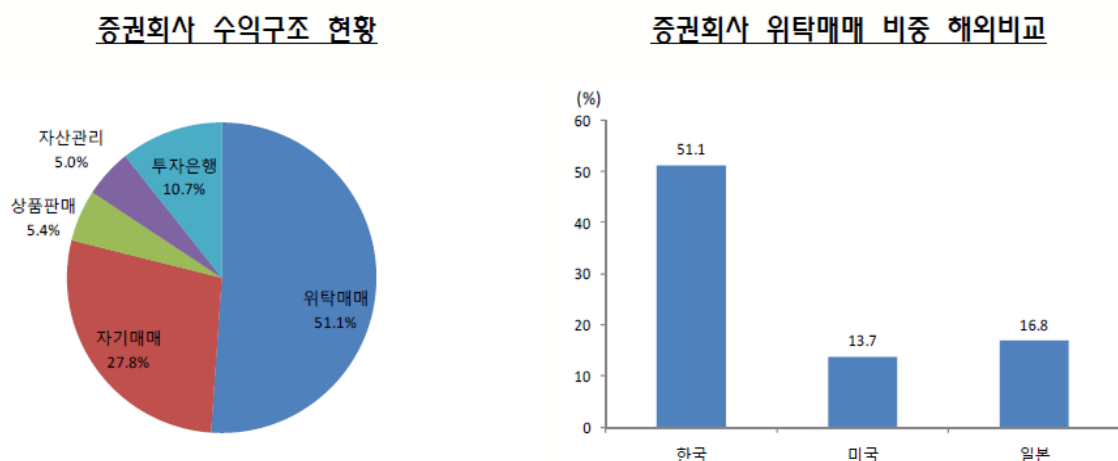
*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100억 달러(약 12조원)이상

⇒ 국내기업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참여 및 M&A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출현 필요성 증대

2 우리나라 IB 업무의 현 주소

-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 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 제도적으로 우리 증권사가 영위가능한 IB 업무의 범위는 해외 투자은행들과 유사*하나 여전히 위탁매매와 같은 “중개업”의 영역에 머물고 있어 IB 업무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진 상황
- * 인수, M&A, PF자문, 주선, 기업신용공여,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글로벌 IB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영위 가능

【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와 위탁매매 비중 해외 비교('14) 】



※ 자료 : KDI.금융투자협회

① 미흡한 자본규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투자은행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자본규모가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
 - *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28.1조원), 중국 중신증권(25.6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조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
-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하여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 투자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
-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RP(37%), ELS(36%)**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73%**에 달함
 -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95%가 1주일이내)**, RP.ELS는 **담보채권 또는 헤지자산 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 활용도가 떨어짐**

③ 종합적인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주식, 채권, 대출, 구조화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융합하여**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투자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
-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 은행에 비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엄격한 자본규제** 등으로 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금융서비스 영역은 여전히 **증권을 매개로 한 중개업무 형태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
 - *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익구조가 주식 중개·대차거래에 편중되어 증권사 기존업무와 차별화가 부족한 실정 (수익기여도 1% 미만)
 - *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점차 증가('13년말 1.1조원 → '16.5월말 4.7조원) 하고 있으나, 부동산 PF.M&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으로 전문화된 기업금융기능이 부족하고 수익기여도도 미미(5% 내외)

④ 글로벌 경쟁력 미흡

- 투자은행이 **대규모의 자기자본, 차별화된 자금조달·공급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
 - *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동반자로서 해외 증권발행, M&A,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앞장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그러나 **글로벌 업무경험과 해외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은 거의 **국내시장에 국한**
 - * '13년~'16.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해외 투자은행의 발전 양상

□ 해외 IB들은 **대형화·검업화·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 ① 해외 주요 IB들은 수 차례의 **적극적인 M&A***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영역을 다각화**
 - * Morgan Stanley 8회, Goldman Sachs 4회, Merrill Lynch 11회(BOA 합병 전까지)
 - * 15년말 자기자본 : Morgan Stanley 88.5조원, Goldman Sachs 102.1조원
- 최근 수년간 아시아 지역시장 선점을 노리는 **중국·일본 IB들의 글로벌 M&A도 활발**
 - * 노무라증권의 리만브러더스 인수(인수 5년만에 흑자전환 성공), 중국 중신증권의 CLSA인수('13), 해통증권의 BESI(포르투갈 IB) 인수('14) 등
- 아시아 역내 경쟁 투자은행들의 **대형화·국제화**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국내증권사와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 *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증권사(자기자본 6.7조)는 자기자본 기준 아시아 12위 수준이며, 현재 자기자본 1위인 NH 투자증권(4.5조)는 아시아 15위 수준

② 다양한 업무간 시너지를 강화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해외 투자은행들은 기업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권역간 협업** 등을 강화

* (예) 상업은행, 투자은행 서비스의 구분 없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대출, 증권, M&A 등)를 한번에 통합 제공(full package)

- 아울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기업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추세

③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기본으로의 회귀 “back to basic”)

- **M&A.재무자문, 증권인수 등 전통적 IB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관리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

* 2014년 전 세계 투자은행의 기업금융 수수료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90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5%의 성장세를 지속

- 자기자본 투자(PI), 채권.원자재 트레이딩(FICC)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은 축소해** 나가는 추세

-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PI, 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인수.M&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 **IB 업무 영역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

*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IB업무 관련 사업부의 수익기여도는 50~60%에 달하나, 국내 대형증권사는 10% 내외에 불과

4 국내 투자은행 육성방향 -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인수가 필요한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대형화를 유도

① 적극적인 위험인수(risk-taking)를 통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

- 자기자본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다양한 위험자산의 운용을 통해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 투자은행의 주요 기능이 위험을 (일시적으로) 인수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 등 보다는 자기자본이 중요

②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자금중개의 효율성 확보

- 자기자본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자금원이 될 뿐만 아니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상환능력)를 가늠하는 척도
- 자기자본이 큰 경우 신용등급, 시장에서의 신뢰와 평판 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비용도 낮아짐

③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 대형 글로벌 M&A, 인프라사업, PF 투자 등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
-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금융산업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투자은행의 대형화가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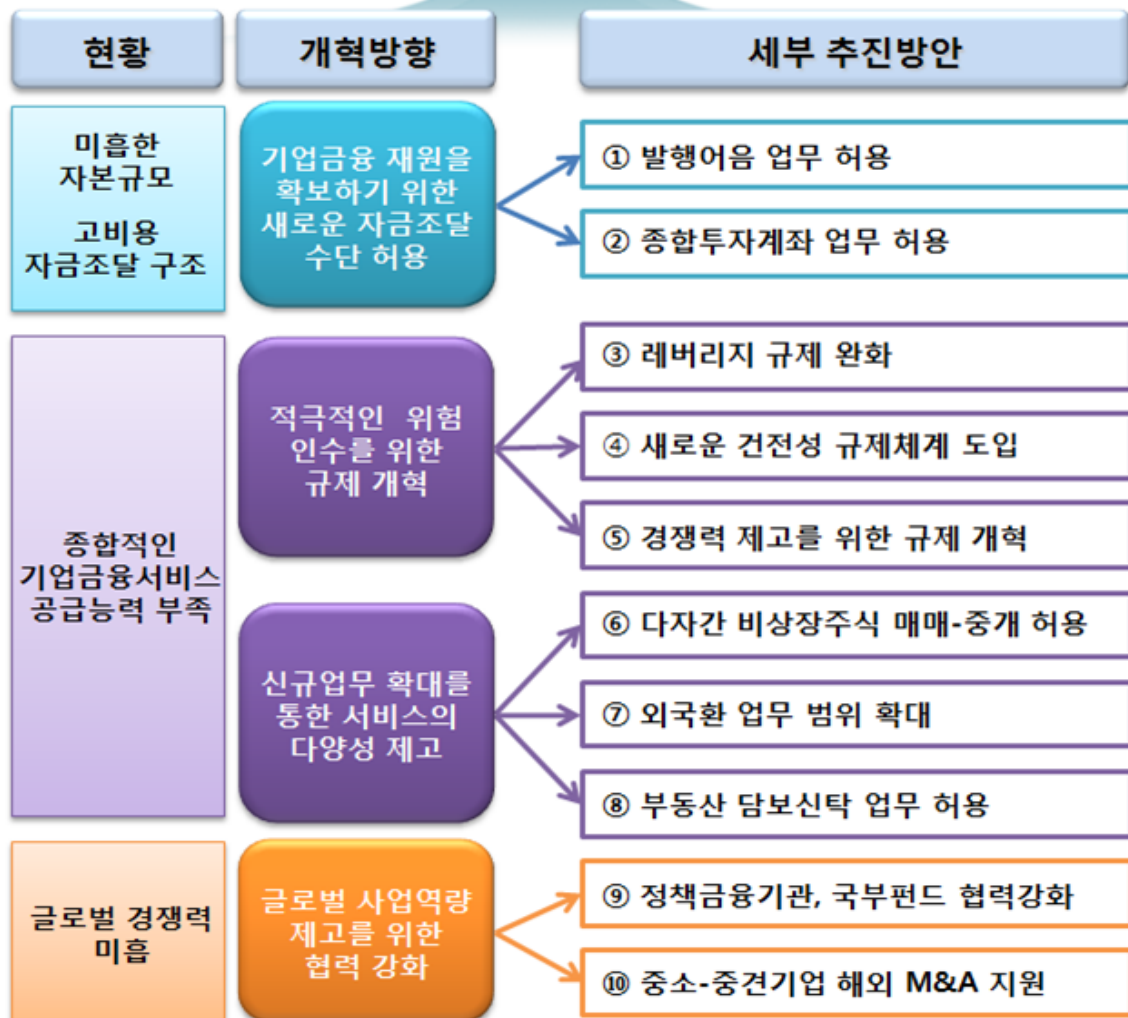
④ 해외 진출 등 국제적 사업 역량 확보

- 적극적인 해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 필요
- 자기자본이 큰 경우 국제적 신인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 거점 확보도 용이

II. 기본방향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등 고부가가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① 기업금융을 위한 자금을 다양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조달·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중개 기능을 대폭 강화
 -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모델을 감안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추가
 -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등과의 협력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



Ⅲ. 세부 추진방안

1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

1 발행어음 업무 허용 (자기자본 4조원 이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발행어음)의 발행업무 허용

*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신을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 발행어음은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ELS.RP와 같은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발행어음은 공모규제(발행공시.신용평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CMA 계좌와 결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음

○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적인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 (예 : 최소 50%이상)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 유도

* 개인여신,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규제

- 발행어음 업무와 함께 만기 1년 이내 어음에 대한 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및 표지어음의 발행업무 등 어음을 매개로 한 기업금융 업무도 허용

○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달리 예금보험 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을 일정수준(예: 자기자본의 200%)으로 제한
-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2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허용 (자기자본 8조원 이상)

□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업무 허용

* 종합투자계좌에 예탁된 자금은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만 허용

○ 종합투자계좌 예수금은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와 유사하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

- 다만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

○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운용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회사채,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집중하여 운용 하되 국공채, MMF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

* 개인여신,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규제

-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위험 채권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단위로 투자위험을 통제하는 등 유연한 운용규제를 도입
- 증권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수시입출형, 만기상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 종합투자계좌는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이점
 - * 주식,파생결합증권 등 편입 제한,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집중된 운용 제한 등

【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주요내용 비교 】

	은행 정기예금	종금사 발행어음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수익배분	확정금리형	확정금리형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발행제한	X	X	자기자본의 일정배수 이내 (예: 200%)	X
기업금융 의무비율	X	X	○ (예: 50%)	○ (예: 70%)
운용규제	X * 증권매입 제한 등 은행 인가범위에 따른 제한은 있음	X	○ * 개인여신 편입 제한 등 최소수준	○ * 회사채, 기업대출 중심 운용
계정분류	고유계정	고유계정	별도계정	별도계정
예금자 보호	○	○	X	X
레버리지 규제	-	X	X	X

2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 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

1 레버리지 규제 완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레버리지 규제(총자산/자기자본<1,10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

* '16.1분기 기준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800%를 상회하고 있어 적극적인 기업금융 업무에 장애가 될 소지

-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별도의 한도규제, 운용규제 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

* 현재 종금업 겸영 증권사들의 종금계정 자산도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

2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도입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현행 NCR 규제 등 건전성 규제체계는 기업 자금공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부담을 부과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 자본 공급을 제약한다는 비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주된 업무인 만큼, 영업모델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 ①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NCR-II) 적용

- 현재는 우량 대출자산이더라도 만기가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채권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 →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하는 형태로 전환**
 - * (현행) 만기 3개월 초과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100%)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
 - (개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AAA등급의 경우 1.6%, BBB 8%)만을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
 - **대출채권 매매, 사모사채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자금공급 능력도 확충**
-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조달.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지표 도입**
- * 투자은행은 대출자산을 유동화하여 매각하는 비중이 높아 대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조달.운용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은 관리 가능
 - 그러나 새로운 영업구조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1개월간 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 등 도입 검토
- ③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 (예) ①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 ②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 적립현황.연체율.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등을 추가로 평가, ③금융회사 내부 위험관리 기준에 여신업무 관련 사항 대폭 강화 등
-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한 건전성 통제체계 확립을 지원

【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

구분	취급현황
일반 증권사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대출채권은 만기.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증액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 기업신용공여,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을 합산하여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 합병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 증액 (모든 증권사)

- 금융투자업자간 합병으로 거래소 지분소유한도(5%)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거래소 지분의 특성상 매각이 어려워* 초과지분의 처리가 지연 → 위법상태 장기화, 헐값매각 우려 등

*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매각 장애요인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간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추진

3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

1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적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업무(내부주문집행)*를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매매주문 금액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대량 주문을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기초한 가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과 유사한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매매체결을 허용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

2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업무를 확대
 - *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확인·보고의무 및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
-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

3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허용 (자기자본 8조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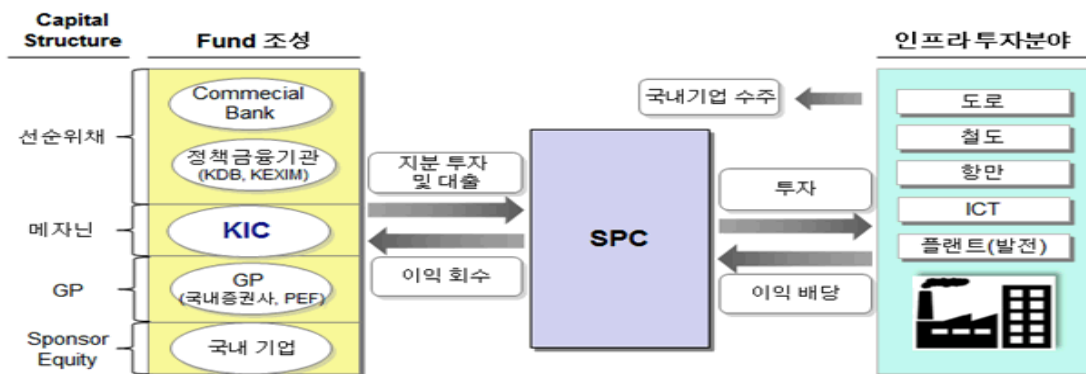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현재 은행에만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
 - * 전업 부동산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겸업 허용
- ※ 담보신탁업무의 절차
 - 위탁자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근저당의 대체수단)
 -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편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변제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1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 협력강화

-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

【 KIC와 해외 인프라 투자 공조방안(예시) 】



- 아울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2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

* 대기업.금융회사 해외진출, 대형 인프라 투자 등은 KIC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 M&A펀드가 지원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하고,
 -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 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

IV.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

□ 증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

-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증자.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현황('16.3월말, 조원)

- ①미래+대우(6.7) ②NH(4.5) ③KB+현대(3.8) ④삼성(3.4) ⑤한투(3.2)
- 미래+대우는 '15년말 기준 제시수치('16.7월 합병승인신청서)
- KB+현대는 '1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단순합산치

□ (i) 자기자본 3조원 이상 (ii) 자기자본 4조원 이상 (iii)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

- ① 1차적으로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

-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여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제공

- ②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 ③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 들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 촉진

* ①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적용, ②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③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④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참고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자기자본	3조 이상 ~ 4조 미만	4조 이상 ~ 8조 미만	8조 이상
------	------------------	------------------	-------

1. 기존 제도상 허용된 업무

프라임브로커 업무	○	○	○
기업신용공여	○ (일반 신용공여와 합산 자기자본 100% 한도)	○ (좌동)	○ (좌동)

2. 금번 대책에서 추가 허용·규제 완화된 업무

<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

발행어음	-	○ (자기자본 200% 한도)	○ (좌동)
종합금융투자계좌	-	-	○

<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편 >

레버리지 규제 적용제외	-	○ (발행어음 한정)	○ (발행어음 종투계좌 한정)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	○	○
신용공여 한도 증액 *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	○	○	○

<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	○	○	○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	-	○	○
부동산 담보신탁	-	-	○

<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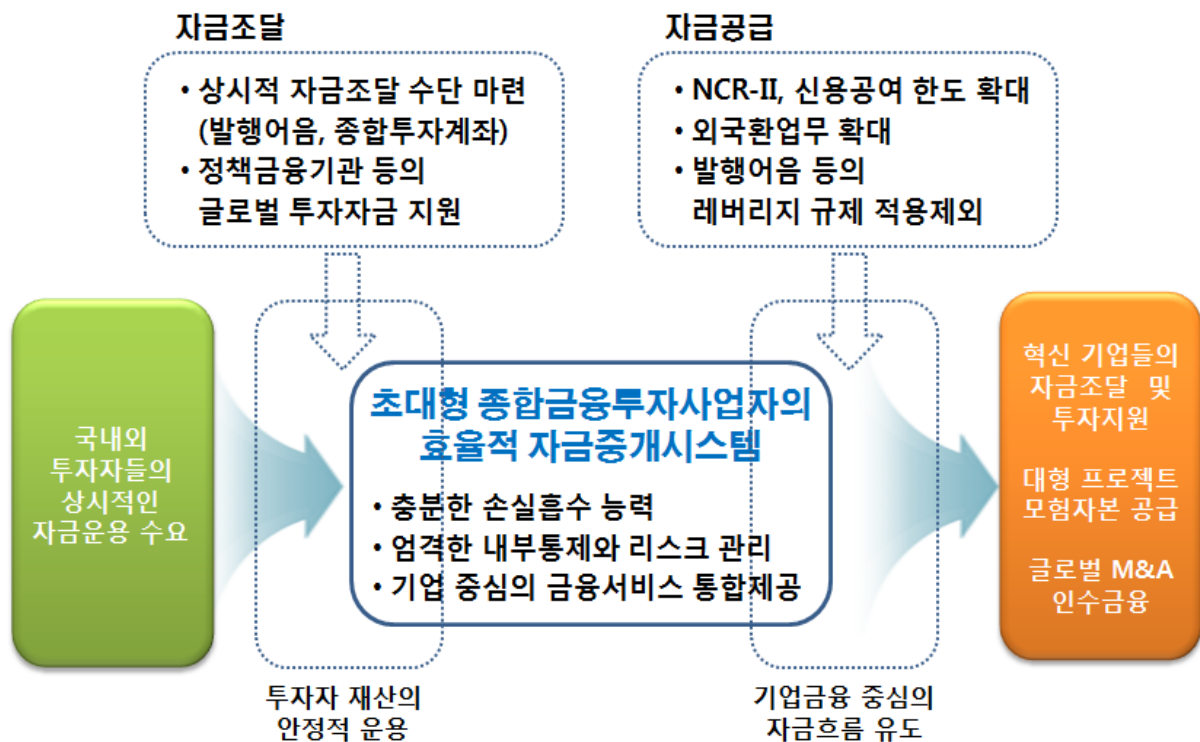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 강화	○	○	○
성장사다리 펀드 해외 M&A 지원	○	○	○

IV. 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고, 대출자산 등 기업자금 공급에 관한 건전성 규제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기업 자금 공급 업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구축

→ 기업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CIB(Corporation & Investment Banking) 서비스 기반을 마련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등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가지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대형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

③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
-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 구조가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과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④ 해외진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

V. 향후계획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
 -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 추진
 - 증권사들의 '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17년 3월 중 확정 되는 점을 감안하여 '17년 2분기부터 시행
 - * 시행 이후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하반기중 세부 방안을 협의·확정

⇒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여타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 중「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은 이미 발표하여 후속조치 추진 중
 - 금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3/4분기 중 발표할 계획
 - 또한, 「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개혁 과제에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투자 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임

* 3/4분기중 발표 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 발행어음 업무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4Q
□ 종합투자계좌 업무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4Q
2.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		
□ 레버리지 규제 적용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4Q
□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4Q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자본시장법 개정	'16.4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증권사 거래소 지분제한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4Q
3.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서비스의 다양성 제고		
□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4Q
□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세부방안 확정	'16.4Q
□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허용	세부방안 확정	'16.4Q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 협력강화	협력 강화를 위한	'16.3Q
□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지원	실무 프로세스 구축	'16.3Q

참고

아시아지역 주요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No.	국가	회사명	자기자본(조원)
1	일본	노무라홀딩스	28.1
2	중국	중신증권	25.6
3	중국	해통증권	21.1
4	중국	국태군안증권	15.7
5	중국	화태증권	14.7
6	중국	광발증권	13.6
7	일본	다이와홀딩스	13.3
8	말레이시아	CIMB	11.7
9	중국	국신증권	9.0
10	중국	초상증권	8.7
11	중국	광대증권	7.7
12	한국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시	6.7 ¹⁾
13	일본	SMBC 닛코 증권	6.5
14	일본	미즈호 증권	6.4
15	중국	동방증권	6.4
16	중국	방정증권	5.6
17	한국	NH투자증권	4.5
18	대만	유안타	4.0
19	한국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시	3.8 ²⁾
20	일본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 증권	3.7
21	중국	국원증권	3.6
22	중국	서남증권	3.5
23	한국	삼성증권	3.4
24	한국	한국투자증권	3.2

※ '15.12월말 기준 (일부 증권사 16.3월말 기준)

※ 1) 합병 후 '15년말 기준 추산치 2) '16.3월기준 자기자본 단순합산치

※ 자료 : 금융투자협회